

# 쌀 조기 관세화 득(得)인가? 실(失)인가?



요즘 쌀 관세화문제에 대해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을 대변하는 주곡작물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쌀에 대해서만은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 관세인하폭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관세를 지향하는 WTO체제에서 쌀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1995년 이후 10년이 지나고 2005년에 다시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또다시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가 없듯이 이미 WTO가입을 통해 국제무역의 규칙에 발이 묶인 우리로서는 WTO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리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으로부터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하고 그 물량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

쌀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이들 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의무 수입한 쌀이 28만6천톤이다. 이는 국내 평균 쌀 생산량을 460만톤으로 볼 때 약 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2만여톤씩 증량해야 하므로 2014년까지 408,700톤을 의무 수입하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408,700톤(7.96%)을 수입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쌀을 관세화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에 대해 이견이 없다.

의무수입 물량은 가공용(74%)과 밥쌀용(26%)으로 구분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쌀 재고물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2014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쌀 조기 관세화를 하여 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해야 이로 인한 물량의 부담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조기관세화론과 쌀 관세화 선언은 변복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영향력을 좀 더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

이 대립되고 있다.



## 쌀 조기관세화 주장

201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매년 누적되는 의무수입량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쌀 관세화를 선언할 경우 그 동안 들여오던 의무수입물량은 30만7천톤으로 고정되어 2014년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약 31만톤(개도국지위) ~ 9만톤(선진국지위) 정도를 덜 받게 되므로 그 만큼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개도국지위를 받게 되는 경우 5년간(2010~2014년) 2,136억원, 선진국지위를 받게 되는 경우 667억원의 쌀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재고관리비용이 10만톤당 약 3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입량이 연간 2~6만톤 줄어듦에 따라 재고관리비용이 연간 62~194억원 절감이 가능하며 5년 누적으로 계산해 볼 때 310억~97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15년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 2014년까지는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톤당 1,000달러 수준인 쌀의 국제 가격이 400~500달러 이하로 하락하거나 환율이 6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최근 세계적인 온난화 영향과 물 부족사태로 인

## 〈부속서 5B항〉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 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 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제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 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 도의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해 쌀 생산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쌀 초기 관세화 신중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 쌀 관세화를 선언하게 되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중론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쌀 관세화유예 조치가 WTO협정 부속서 5B조항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양허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 할 경우 WTO타결 시점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얻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가 보장되

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쌀 관세화를 선언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쌀을 개도국 특별품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해 당사국들이 자국의 관심 품목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의 쌀 특별품목 수용에 대한 대가로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문호 개방 수준을 더욱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TO가 타결된 이후에 쌀 관세화 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필요

쌀 관세화 문제는 WTO의 올가미에 묶인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더 이상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년 쌀 소비율이 2%이상 급감하고 있고 재고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짊어 지고가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쌀 관세화 선택은 향후 5년간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위험성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가 달려 있는 이번 결정은 쌀 관세화 자체에 대한 실익과 WTO에서의 한국농업의 입지, 쌀 관세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다각도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도, 관세청은 관세포털, 원산지 위반, 외환거래 신고 누락 등의 관세장벽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입행위의 증가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체계상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여지가 충분하다.(신선·냉장마늘 관세 360% / 냉동마늘 27%, 버터 89% / 혼합버터 8% 등) 이처럼 쌀 관세화 선언 이후 지금과 달리 쌀 가공식품(햇반 형태)이 신선농산물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낮은 관세로 들어온다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증가로 한해 햇반 시장이 70~8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쌀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관세포털 : 수입업자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 정상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직접 결재하는 방식

따라서, 한농연은 좀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 주도의 협의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언론플레이와 쌀 관세화 속도전을 그만두고 농민단체의 논의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쌀 관세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농연은 연초 정부주도의 쌀 조기관세화 움직임에 대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참여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다각적인 언론활동을 통해 농민단체 주도의 쌀 관세화 논의를 만드는데 주력하며 신중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 2009년 5월 18일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농정이슈 보고)
- 2009년 5월 22일  
-쌀 조기 관세화 쟁점은  
(한겨레신문 인터뷰)
- 2009년 6월 9일  
-흐름과 소통(경향신문)
- 2009년 6월 23일  
-토론회(한국경제연구소)